



2012. 9
서울 한결음, 자연 한결음

푸른빛 가득한
고양원흥
보금자리지구
국민임대주택 A1BL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5-3번지

임대문의

본사콜센터 | 1600-1400
홈페이지 | www.LH.or.kr



이제 집안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 myhome.lh.or.kr 으로 신청하세요!

SPECIAL CITY LOCATION

서울진입까지 3km,
탁월한 서울접근성에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활력 넘치는 도시생활이 펼쳐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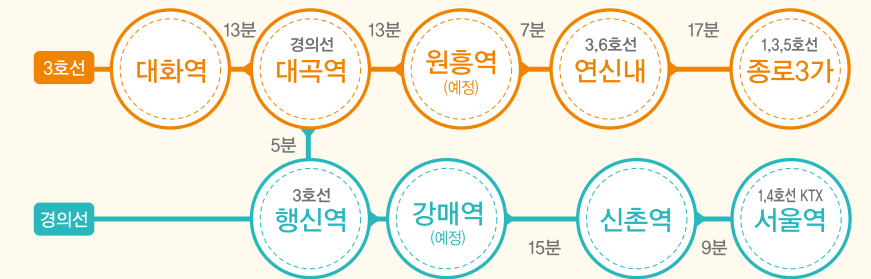
3호선 원흥역(예정)



강매역(설계당선작/ 예정)



북한산과 은평뉴타운(지구인근)



[사통팔달의 쾌속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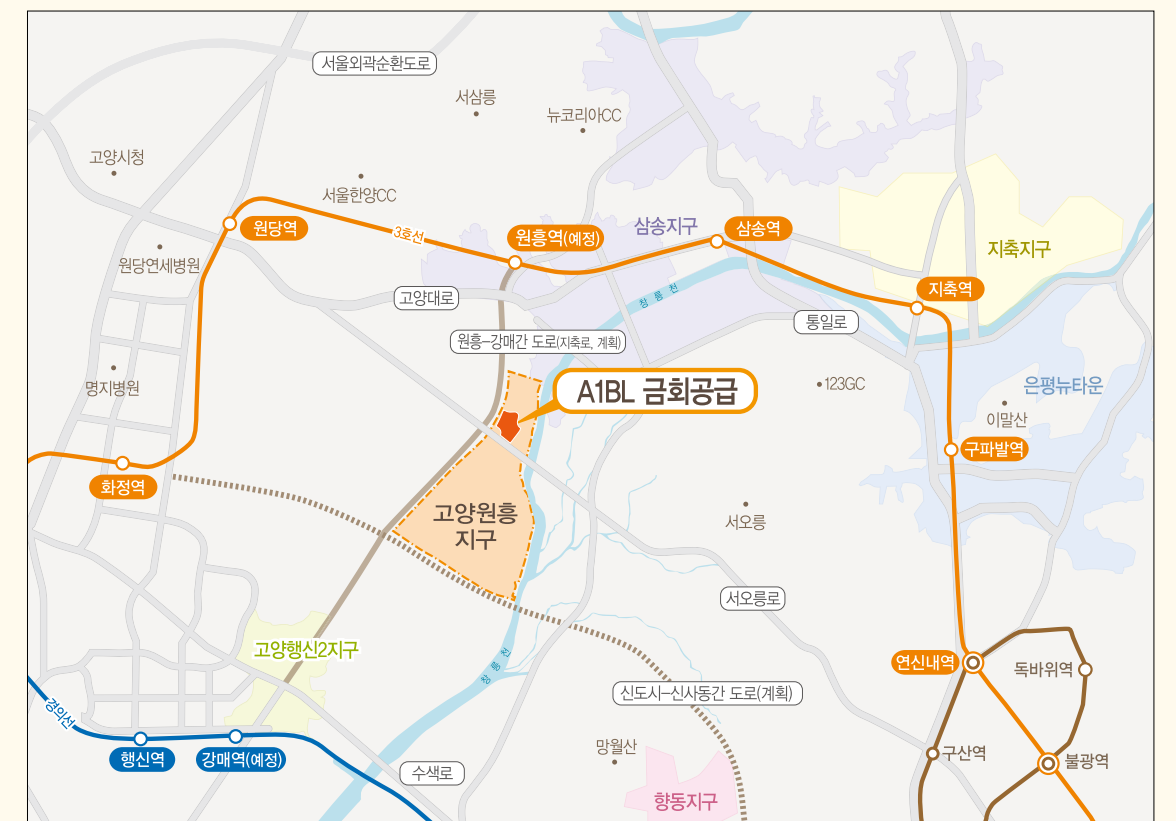
원흥~강매간 도로(지축로, 계획), 서오릉로(확장), 신도시(백석)~신사동(은평구)간 도로(계획)를 통해 서울 진출입이 편리하며, 그밖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 강변북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서울 진입까지 자동차로 3km의 지리적 이점에 더하여 지구 인근 3호선 원흥역 신설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생기 넘치는 녹색도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되는 보금자리지구로서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주거환경이 쾌적합니다. 또한, 지구 내에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지구주민의 운동, 여가 등 건강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활력 넘치는 자족도시]

고양원흥지구는 주택과 가로공간을 연계하여 가로를 중심으로 상업문화복지시설 등을 집적화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는 등 도시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생산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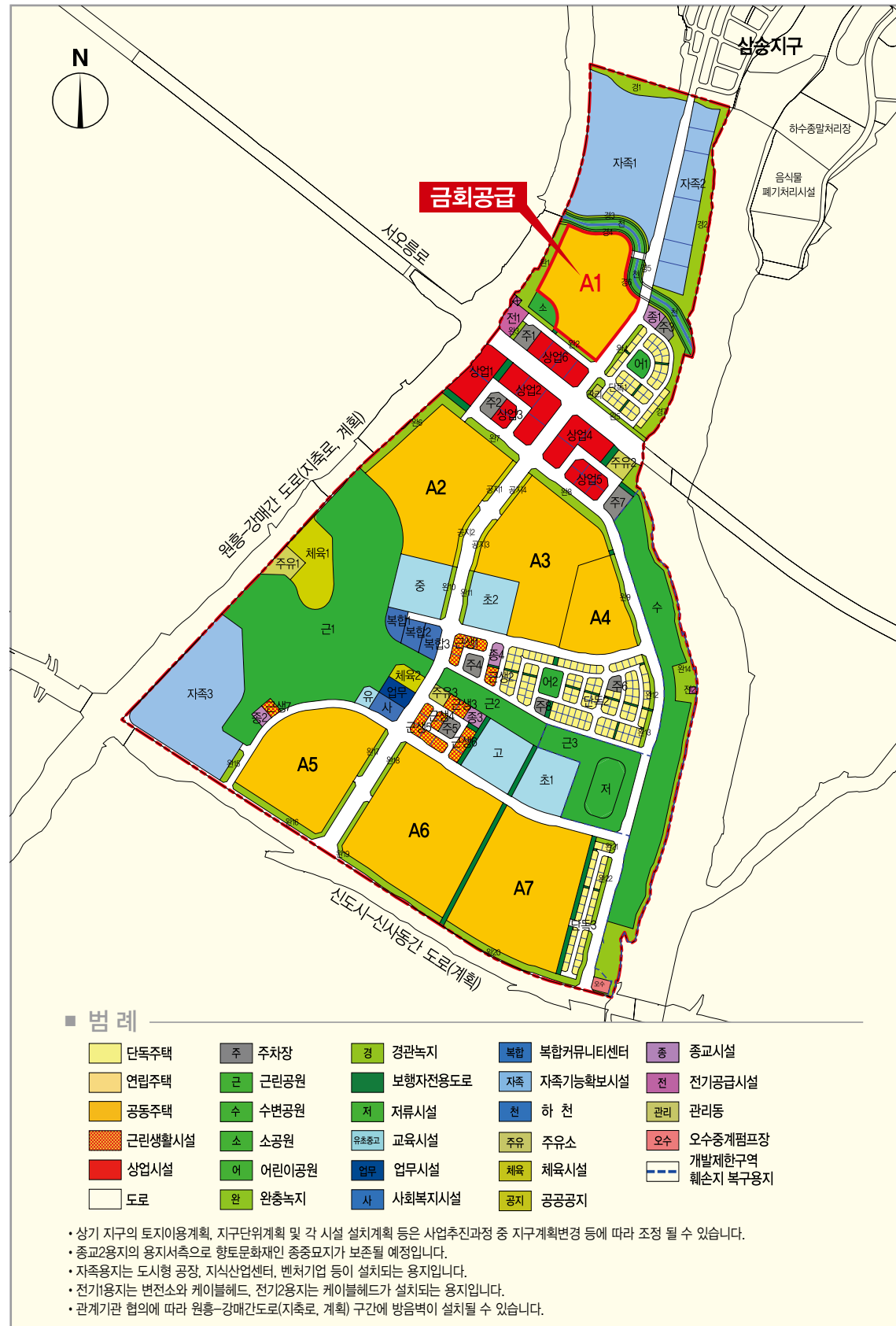


- 상기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관련 계획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교통망의 경우 향후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세부계획 수립내용에 의거 확정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흥~강매간 도로(지축로), 신도시~신사동간 도로는 입주시까지 개통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원흥역 및 강매역은 공사여건에 따라 개설, 연기 가능합니다.

SPECIAL CITY LANDSCAPE

편리한 생활 속에 푸르른 자연을
가득 담아 즐거움을 더합니다.

맑고 깨끗한 녹색도시가 만들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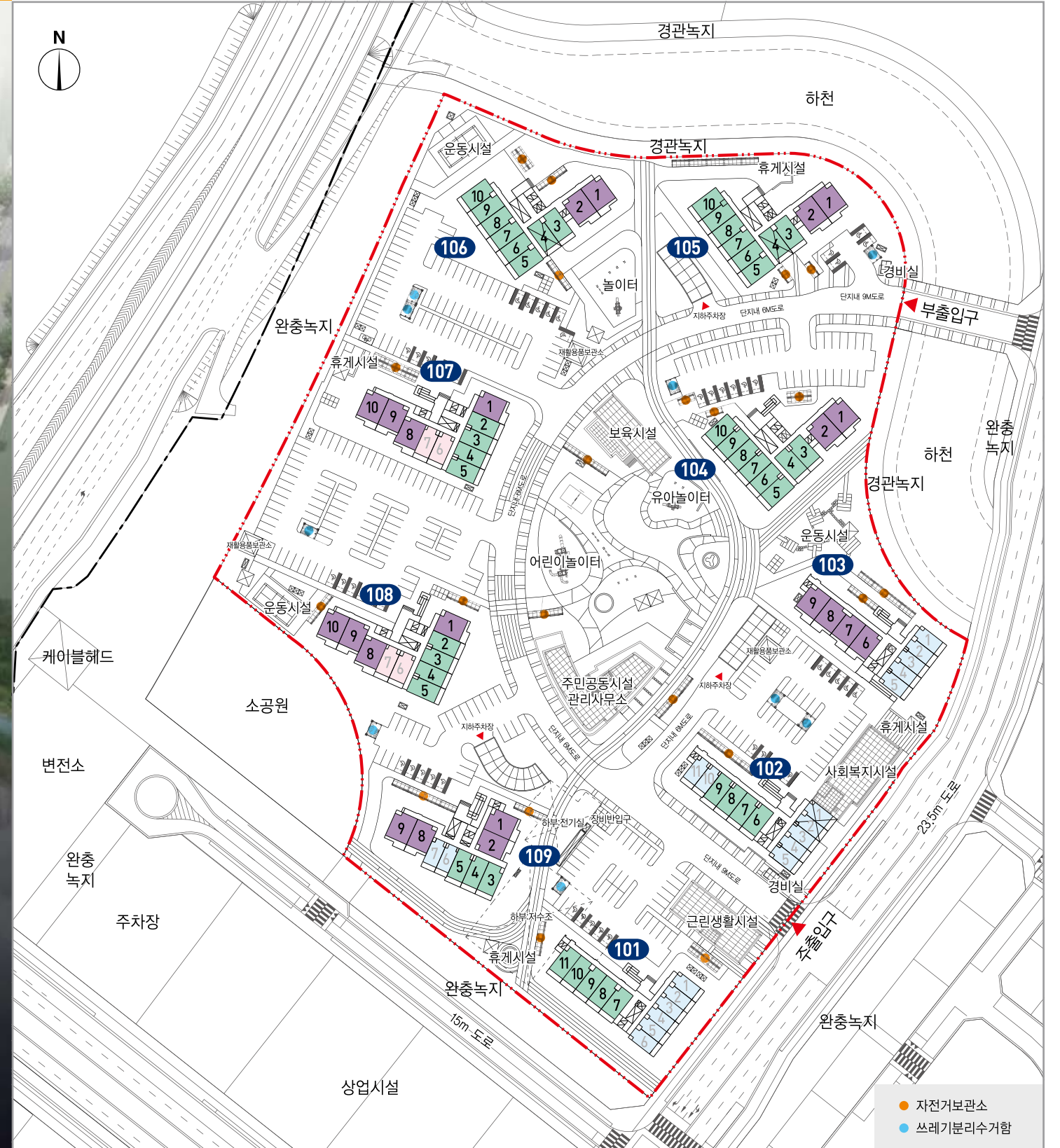
• 상기 지구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자연과 함께, 편리한 생활로 행복을 더하는 고양원흥 보금자리

-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로 활용한 생활공간을 조성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 창릉천변 수변공원화로 운동·여가 등 다양한 휴식을 제공
- 가로를 중심으로 상업·문화·복지시설 등 집적화
- 생활가로 조성으로 도시기능을 강화





SPECIAL CITY ARCHITECTURE

편리한 생활환경으로 행복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단지주변에 상업, 문화, 복지시설 등의 조성으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지구내 전기공급을 위한 변전소와 고압송전철탑 지중화를 위한 송전철탑(케이블헤드)이 설치될 계획이며, 설치되는 케이블헤드와 A1블록은 부지경계로부터 약 40m 이격되어 있음.
- 상가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햇살과 바람, 푸른녹지가 있는 단지에서 특별한 만남과 여유로운 휴식이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가족과 함께 건강한 몸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공간입니다.
- [어린이놀이터] 아이들의 감성과 지성발달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놀이 공간입니다.
- [휴게소] 이웃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며, 여유로운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하게 마련됩니다.

금회공급(국민임대)	36형 846세대	추후공급(영구임대)	26형 268세대
총 1,238세대	46형 392세대	총 340세대	33형 72세대

SPECIAL CITY
UNIT PLAN

단위세대

36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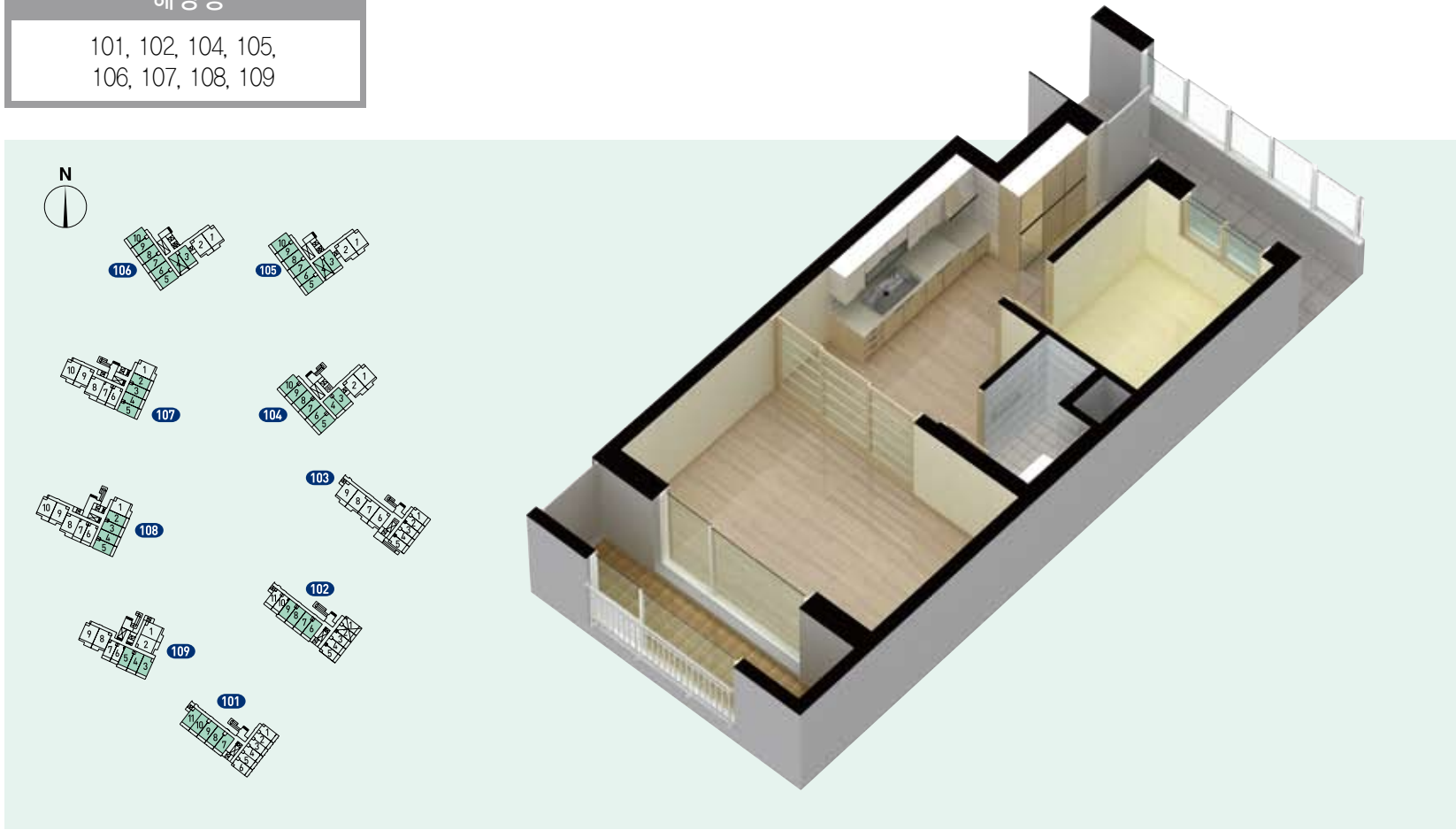
전용 36.73m² | 846세대

전 용 면 적	36.7300m ²
주 거 공 용 면 적	18.7148m ²
기 타 공 용 면 적	1.4501m ²
지 하 주 차 장 면 적	15.5666m ²
계 약 면 적	72.4615m ²

침 실 1	7.00m ²
거 실 / 침 실	14.30m ²
주 방 / 식 당	10.30m ²
욕 실	3.07m ²
현 관	2.06m ²
발 코 니	7.23m ²

해 당 동

101, 102, 104, 105,
106, 107, 108, 109



- 상기 평면도의 는 에어컨 실외기 표시입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관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니,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m² × 0.3025=평)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시도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신발장, 싱크대만 설치)

SPECIAL CITY
UNIT PLAN

단위세대

46m²

전용 46.27m² | 392세대

전 용 면 적	46.2700m ²
주 거 공 용 면 적	23.5757m ²
기 타 공 용 면 적	1.8268m ²
지 하 주 차 장 면 적	19.6097m ²
계 약 면 적	91.2822m ²

침 실 1	8.06m ²
침 실 2	9.78m ²
거 방 실	7.80m ²
주 방 / 식 당	15.05m ²
욕 실	3.43m ²
현 관	2.15m ²
발 코 니	9.75m ²

해 당 동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상기 평면도의 빨간 점선은 확장전 벽체라인이며 는 에어컨 실외기 표시입니다.
-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관장으로 평단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니,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m² × 0.3025=평)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시도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시도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류는 이미지컷으로 입주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신발장, 반침장, 싱크대만 설치)

동·호배치도

												1607	1608	1609	1610	1611
												1507	1508	1509	1510	1511
												1407	1408	1409	1410	1411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207	1208	1209	1210	1211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007	1008	1009	1010	1011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807	808	809	810	811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607	608	609	610	611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407	408	409	410	411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207	208	209	210	21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26	26	26	26	26
												36	36	36	36	36
【101동 80세대】 36형 80세대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806	807	808	809	810	811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606	607	608	609	610	611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406	407	408	409	410	411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206	207	208	209	210	21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26	26	26	26	26	26
												36	36	36	36	36	36
【102동 68세대】 36형 68세대																	

						1906	1907	1908	1909
						1806	1807	1808	1809
						1706	1707	1708	1709
						1606	1607	1608	1609
						1506	1507	1508	1509
						1406	1407	1408	1409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26	26	26	26	26	46	46	46	46	46
【103동 76세대】 46형 76세대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26	26	26	26	26	26	26	26
												46	46	36	36	36	36	36	36
【104동 206세대】 36형 168세대, 46형 38세대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26	26	26	26	26	26	26	26
												46	46	36	36	36	36	36	36
【105동 204세대】 36형 166세대, 46형 38세대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201	202	203	필로티	205	206	207	208	209	210	
101	102	103		105	106	107	108	109	110	
46	46	36	36	36	36	36	36	36	36	
【 106동 202세대 】 36형 166세대, 46형 36세대										

주요 마감재시설내역

품 목		임대지구 시설내역	비 고
현 관	현관도어록	레버식 도어록	
	신발장	설치	
	현관바닥	자기질 타일	
	현관등	센서등	
거 실	거실바닥재	PVC마루(3.0T)	
	거실벽지	실크벽지	
	거실천정지	발포벽지	
주 방	싱크대	싱크+상부장+하부장	
	개수대	스텐언더형	
	렌지후드	디럭스형	
	주방싱크수전	3단 또는 비례조절절수	
	주방상판	BMC	
	주방벽타일	도기질 타일	
침 실	침실바닥재	룸카펫 2.0T	
	침실벽지	실크벽지	
	침실천정지	발포벽지	
	침실문짝	합성수지/목재	
욕 실 (조립식욕실)	창호	플라스틱 창호	
	욕조	아크릴 급	46형만 해당
	세면기	도기류	
	양변기	준 원피스형	
	욕조수전	싱글레버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발코니	욕신타일	벽:도기질타일, 바닥:자기질타일	
	발코니샤시	플라스틱 창호	
	발코니수전	세탁기용 가로꼭지+물뿌리개 호스	
기타/정보통신	비디오폰	컬러비디오폰	
	주방라디오폰	설치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	
	CCTV시스템	설치	

• 상기 마감재는 자재의 품질, 품기, 기타사유 등의 이유로 시공여건상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 문짝 등의 형태, 무늬 및 내부마감재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안내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고려개발(주)이며, 감리업체는 (주)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임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계약 후 입주 전에 개별 통보함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모형,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팜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양원흥지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현장상황 및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 주변 토지용도 및 주택 유형별 건설계획, 공사계획 등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개발진행단계로서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입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로등, 공원등, 보도육교, 전기공급시설, 정압기 등 공공시설물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지구 내외의 기반시설이 입주시기에 맞추어 건설 중에 있으나 일부시설은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위치 및 용량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완공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창, 지하주차장 계단실,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외 도로개설(신설 및 확장)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단지내 조경설계는 현재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최초 계약체결기간내 계약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함**
- 지구내 학교개교 시기는 관계기관 협의 및 공사진행과정 상 변경될 수 있으나, 원흥1초(흥도초) 및 원흥중학교는 2014년 3월 개교예정이며, 원흥2초 및 고등학교는 2015년 3월 개교예정임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지붕)에 공청용 TV안테나와 위성안테나가 설치되며, 해당 동은 지붕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원흥지구 내에 전기공급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자족기능확보시설 등이 입지하며, 원흥지구 북측 삼송지구 남단에 환경자원시설(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바이오매스 시설) 설치계획이 수립(약 320m이격)되어 있으며, 원흥지구 내 발생되는 하수처리는 삼송지구 내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종말처리장으로 하수 이송을 위하여 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가 설치 예정임
-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의 훈련(사격장 등) 및 지구 남측 약 2.5km 지점에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수색비행장)이 있어 항공기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용이 불가함
- 현재 고압송전철탑(154kv 3기, 345kv 1기)이 지구 내를 관통하고 있어 지구내는 지중화 예정이며, 지중화를 위한 송전철탑(케이블헤드)이 '전기1용지'와 '전기2용지'에 계획되어 있으며 전기1용지에는 지구내 전기공급을 위한 **변전소와 케이블헤드가 설치될 예정으로 A1블럭은 부지경계로부터 약 40m 이격되어 있음**
-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됨
- 사업지구 남측에 신도시-신사동간 도로, 서측에 강매-원흥간 도로는 도시계획 예정도로로서 개통시기가 고양원흥지구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구중앙 서오릉로는 지하차도로 계획되어 있음
- 자족용지는 자족기능향상을 위한 용지로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이 설치되는 용지임
- A5BL 서측 종교시설2용지는 종중의 재실, 사당 등으로 건축예정이며, 종교시설2용지 서측 근린공원1 내에는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묘지가 보존되어 있음
- 2013년 12월 예정된 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중앙 서오릉로 북측에 지하차도 관리를 위한 전기·기계실이 설치되는 관리동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남서측 지구밖으로 소수의 분묘가 위치하며, 근린공원3내에는 저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구내에는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상시우수가 노출되어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고양원흥 A1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2012. 9. 24 공고)

- ※ 고양원흥 A1블록은 국민임대(1,238호) 및 영구임대(340호) 혼합단지로서 이번 모집은 국민임대주택(1,238호)만을 대상으로 하며,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전 별도 모집 예정입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신 후 본인의 해당 신청일정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유형별(우선 또는 일반) 및 신청순위별(1,2,3순위)로 신청일자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날짜가 아니면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 **현장방문 신청 시 4~5시간 이상 대기시간**이 예상되므로 기관추천 대상자(국가유공자 등)가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원흥 A1블록 국민임대주택은 고양삼송 A16블록 및 파주운정A13블록 국민임대주택과 동시 시행으로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된 경우 모두 신청취소됩니다.

이젠 집안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myhome.lh.or.kr)으로 신청하세요!
고양원흥 A1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방법(www.lh.or.kr → http://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반드시 세대주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증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청약(아파트) → “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1단계지구조회

2단계주택형조회

3단계유익사항 및 우선/일반공급선택

4단계순위선택

5단계서약서작성

6단계배점표작성

7단계신청서 작성(신청내역확인)

※ **철거민,기관추천대상자(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는 인터넷신청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시 문의사항 : 1600-1004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급유형별, 신청순위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 소득 · 배점항목 등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에 나타난 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자는 신청(입력)한 내용과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누락 등 착오입력,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첨(예비) 대상자에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해당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서류내용이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예비) 대상자 제외 등을 받게 됨에 유의하세요.

– 인터넷 청약신청은 신청순위별 신청일자에만 가능하고, 인터넷 청약 시간은 오전10시~오후4시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마감 시간에 압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신청 1~2일 전 청약신청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10월 29일(월))에 반드시 대상자 여부 인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 **현장방문 신청 시 4~5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청약신청을 권장**합니다.
- 방문신청은 공급유형별, 신청순위별 지정일자에만 신청가능하고, 청약 시간은 **오전10시부터 ~ 오후4시**이며,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 : 파주시 외동동 145-3 LH 파주주택전산관)
- 기관추천대상자(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와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신청할 경우 하단의 신청서류 외에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으로 신청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없이 그 관계입증서류 제출로 갈음하여 신청가능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 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됩니다.

1 건설위치 및 호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일원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블록 국민임대 (1,238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고양삼송A16블록 및 파주운정A13블록과 동시 신청 불가, 동시 신청자는 자동 당첨 취소됨)

공급 형태	세대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공급호수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시기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밖의 공용면적			우선 공급	일반 공급	해당동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천원)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36	36.73	18.7148	1,4501	15,5666	72,4615	846	654	192	101~102 104~109	16,500	3,300	13,200	17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복도식	2014년 10월
46	46.27	23.5757	1,8268	19,6097	91,2822	392	337	55	103~109	28,000	5,600	22,400	240		

※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0.3025
※ 신청은 1개 단지의 1개 형별에만 가능(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하며, 동호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변경 불가(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함)
※ 101동~103동 및 107동~109동은 영구임대주택(26형, 33형) 한 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전 별도 모집예정임.

3 신청자격 (고양삼송A16블록 및 파주운정A13블록과 동시 신청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 9. 24)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	참고사항
소득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임신 진단서 제출하여야 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 세전 금액임
	4인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450,450원이하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 구거 ·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증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60세 이상 노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무허가주택 등(공공규칙 제6조 제3항 규정)으로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액 합산 시에는 포함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자동차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 일반공급 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는 전용면적 50㎡미만까지만 신청가능
- ※ 타지구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해당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판정 시 계약 해지됨.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에 거주하면서 ② 혼인가년이 5년 이내이고 ③ 혼인가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임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임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 불법낙태 · 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4 공급일정 및 장소 (고양삼송A16블록 및 파주운정A13블록과 동시 신청 불가)

※ 철거민, 기관추천대상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일반공급 및 기타 우선공급은 인터넷 · 방문신청 병행

신청 형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순위	신청접수 일정		신청방법
			일자	시간	
전용면적 50㎡미만 (36형 · 46형)	▶소득 70% 이하 2,974,030원이하 (단, 4인 가구 : 3,303,550원이하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이하)	우선공급 1 (규칙 제32조 4항, 6항~10항) 사업지구 철거민, 3자녀이상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 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2012.10.4(목)	오전10시 ~ 오후4시	1. 인터넷 접수 ☞ 공사분양 · 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2. 방문 접수 ☞ 경기도 파주시 외동동 145-3번지 (대기시간 4~5시간이상 소요될 수 있음) ※해당 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인터넷 및 현장방문접수 모두 시간을 엄수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2 (단, 4인 가구 : 3,303,550원이하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이하) 만65세이상고령자, 노부모부양,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법정규칙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장,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남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2012.10.5(금)		
		▶소득 50% 이하 2,124,300원이하 (단, 4인 가구 : 2,359,680원 이하 5인이상 가구 : 2,464,610원 이하)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일반공급 3순위	2012.10.8(월) ~ 2012.10.9(화) 2012.10.10(수) 2012.10.11(목)	
전용 50㎡미만	▶소득 50%초과 70%이하 2,124,300원~ 2,974,030원이하 (단, 4인 가구 : 3,303,550원이하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이하)	일반공급 1, 2, 3순위	2012.10.12(금)		

- ※ 기관추천대상자(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장접수의 경우 당일 유효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시 접수불가하오니 접수 전 서류준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류미비로 현장접수 불가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 방문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간설호수+예비입주자(간설호수의 40%))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8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 신청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해당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주자 선정기준 및 방법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기준	비 고
전용면적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 ▶ 배점 합산순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는 별도 기준으로 선정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입주자 선정 방법		
전용 50㎡미만	1. 가구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 이하	2,124,300	2,974,030
	4인	2,359,680	3,303,550
	5인이상	2,464,610	3,450,450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파주시, 양주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3. 동순위내 경쟁발생 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14 + 15
Goyang Wonheung A1BL
입주자 모집안내

■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만50세 이상 (1962년 9월 25일이전출생)	만40세 이상 (1972년 9월 25일이전출생)	만30세 이상 (1982년 9월 25일이전출생)
② 부양가족수 (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 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고양시 거주기간)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계산)	5년이상 (2007년 9월 24일이전부터 거주)	3년이상 5년미만 (2007년 9월 25일 ~ 2009년 9월 24일 거주)	1년이상 3년미만 (2009년 9월 25일 ~ 2011년 9월 24일 거주)
④ 미성년자녀수(1992년 9월 25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태아)	3자녀 이상	2자녀	-
⑤ 만65세 이상(1947년 9월 25일이전출생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1년 9월 24일이전부터) 부양자: 3점 단,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3점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고용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⑧ 청약저축(주거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0회이상: 3점, 나. 48회이상 60회미만: 2점, 다. 36회이상 48회미만: 1점			

⑨ 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공화국, 특수 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양부피해자, 만65세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 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상정기준**
가. 과거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⑤, ⑥, 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란? 세대주(신청자) 본인, 제형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세대원들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 가족을 포함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거 소지(재취주)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은

6 우선공급 배정호수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영별	우선등급																		일반 공급
	계	주택공급규칙 제 32조																	
		제4항	제5항									제6 항	제7 항	제8 항	제9 항	제10 항			
			사업지구 철거인	만 65 세 이 상 고 령 자	노 부 모 부 양 자	장 애 인	장 기 복 무 제 대 군 인	중 소 기 업 근 로 자	북 한 이 탈 주 민	한 부 모 가 족	비 정 규 직 근 로 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타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성폭력피해자		
신청일		'12.10.4(목)			'12.10.5(금)									'12.10.4(목)					4번 참고
36형	846	19	25	17	43	8	8	8	17	25	17	85	85	25	17	255	192		
46형	392	38	12	8	20	4	4	4	8	12	8	40	40	12	8	119	55		

※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상기표에서 배정호수가 부여된 공급형별로 5번 항목의 우선공급 입주자선정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에 미달하거나, 향후 인터넷 당첨자의 서류미제출 및 부적격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사업주제,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 해당승인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나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당해 사업지구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합쳐 부과함 <table> <tr> <th>기준소득 초과비율</th><th>10%이하</th><th>10%초과 30%이하</th><th>30%초과</th></tr> <tr> <td>임대조건 할증비율</td><td>10%</td><td>20%</td><td>40%</td></tr> </table>	기준소득 초과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기준소득 초과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노부모부양 만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u>1947년 9월 25일이전출생자</u>)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u>1년이상(2011년 9월 24일이전부터)</u>부양하고 있는 자 (※ 반드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② <u>장애인등록증</u>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신체인, 정신장애인,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로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겐 먼저 공급 (※장애등급이 높은 자 · 배정 높은 자 · 추정한 순서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장기복무 제대군인</u>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u>근로자</u>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만65세 이상(<u>1947년 9월 25일이전 출생자</u>) 고령자 ⑩ 「이동복지법,제2조제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u>아동을 보호 ·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u>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른 <u>탄광근로자</u>이거나 <u>탄광근로자</u>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u>1997년9월 24일이전부터</u>)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 · 도지사가 지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미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u>남북미해자</u>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통일부에서 남북미해자로 확인된 자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u>성폭력피해자</u> 또는 <u>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u>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자녀 이상 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6항)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7항)	국민인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자향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인구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인구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영구임대주택거주자 (주택공공규칙 제32조제8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아님)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9항) 공작물 거주자 중 나(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선정방법(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10항)**

구 분	신청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면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2007년9월 24일 이후 혼인신고)이고, ③ 혼인기간 중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 포함해서 자녀가 있어야 함
1. 2순위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① 순위(1순위 → 2순위), ② 거주지역(고양시 거주자 → 그 외 수도권), ③ 자녀수가 많은 자, ④추첨 순으로 선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2009년 9월 24일 이후 혼인신고),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2007년 9월 24일 ~ 2009년 9월 23일 혼인신고) *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며,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수 선정방법 등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1992년 9월 25일 이후 출생)인 자녀를 포함하, 신청자 및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됨 * 재혼의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및 임양포함)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대타의 경우 모두 무효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임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임양임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을 취소함 － 출산서류: 출생증명서, 우선·낙태관련 진단서 등(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자 입주지정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양유지 확인서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

7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2.9.24) 이후 발급분만 유효)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고양시)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 입자, 세대원과 세대주의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함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고양시에서의 계속된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추가 제출 ※ 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의관계 등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주택금융신청서 (창안취취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청약자측 약정 납입일에 36회 이상 납입한 자(가점에 사용) ※ 청약자측통장의 명의와 신청세대주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함 (발급기관 :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청약취취확인서 인터넷발급 ☞ http://www.apl2you.com/(국민은행은 국민은행홈페이지에서 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12-000881 (청안취취확인서 발급 시 필요)	1통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의료보험증은 신청세대의 소득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소득자가 누구인 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의료보험증 발급일자가 2012년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의료보험증을 재발행하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팩스발급 가능)	1통

- 기타서류: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임신중임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공공자의 경우 국가공공자증) 사본 1통: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전용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소득입증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9.24)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소득관련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2011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단, 2011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2011년도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해당직장/ 세무서
	'12년 신규취업자 또는 '12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12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각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20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2011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직장
신규사업자 등 소득임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소득 미신고(미납)된 경우 소득신고 후 해당 확인서 제출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조정양식)	접수창소 비치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다음 항목에 해당자는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인터넷 신청자께서도 우선공급제출서류 발급 가능여부를 미리 발급처에 문의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우 선 공 급 대 상 자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제3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인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래래 참조)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로력이 있는 재임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별로 산해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 또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중인 자	제출서류: 국민인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 →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⑦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신청서 이성 인식확인서,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자성 추가지원신청서 이성 입주사실확인서	시·군·구청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⑩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우 선 공 급 대 상 자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유무상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⑫ 영구근대주택 국민인대주택 아님, 계약사에서 반드시 유형완결의 거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⑬ 비닐강아(공작물 거주 및 비닐강아(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재국토해양부로부터 통보되어 주거여객차승명단에서 확인가능한자)	비닐강아(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참소장소
	⑭ 이동여객차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 임신진단서 외에 발산서류만 접수하면 된다	주민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인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경찰 지방경찰청
	⑰ 단공근로자거나 단공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인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관할한국 공해관리공단
	⑱ 납북피해자	국민인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⑳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신청서 등 인식확인서	시·군·구청
	동 일 인 수 위	① ~ ③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임대계약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④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중소기업소재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기업소재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장등록증 사본(사업장등록증의 사업의 종류에 「제조」라는 명칭이 있어야 함) -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해당 직장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퇴직금제적법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자선택원천(지정)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 제3제3항 제4호~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인대주택신청자		국민인대주택신청서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유무상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인대주택신청자의 소득명세서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또는 확인된 영구임대주택대상자확인서, 수급자 소득명세서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일권위임부피해자	일권위임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경 정 시 배 정 서 류 (입주자 선정 기준 참조)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인대주택신청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명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복지대상요양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대상자 증명서, 차상위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대상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⑩ 청약자축 납입신청(주택공급신청서, 청약서 위임서)	청약자축납입서류 확인	가임은행/ 금융결제원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자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자축등록 면 사본	-

■ 인터넷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하신 분들 중 당첨에 유효한 범위내로서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아래 기간내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자 발표 : 2012년 10월 29일(월) 오후 4시 이후
※인터넷 발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국민임대 서류제출 대상자조회” 클릭
- 서류제출 기간 : 2012년 11월 2(금), 11월 5(월) ~ 11월 6일(화) 오전10시 ~ 오후4시
- 서류제출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5-3번지 LH 파주주택전시관
- 제출서류 : 7번 신청서류 참조(공통 서류 및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결과 서류내용이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평면일 때에는 **불이익(당첨(예비)대상자 제외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의해 11월 23일(목) 오후4시 이후 최종 당첨(예비)자를** 확정합니다.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일정 및 장소

–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 서류제출기한 내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 (제출서류 : 공고문 상단의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공통서류 및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일체)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		최종 당첨자 발표
대상자 발표	대상자 서류 접수	
2012. 10. 29(월) 오후 4시 이후	2012년 11월 2(금), 11월 5(월) ~ 11월 6(화) 오전10시 ~ 오후4시(LH 파주주택전시관)	2012. 11. 23(금) 오후4시 이후

– 주택의 동 · 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항별 구분없이 추정하며, **당첨자 명단(인터넷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포함)**은 발표 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031-710-79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분양 · 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국민임대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당첨자 발표 : 분양 · 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당첨자 명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할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향후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주택과 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전산검색 후 부적격자는 향후 개별 당첨 취소 통보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안내

계약일시 : 2012. 12. 13(목) ~ 18(화), 오전10시 ~ 오후4시 (토 · 일요일 제외)

– 계약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5-3번지 LH 파주주택전시관

– 구비서류 : ①계약금 ②본인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③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가 대리하여 계약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인감증명서)등 추가제출.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가산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 납부 시에는 자기앞수표 1매(수도권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로 준비하시면 분실 대비 및 시간 단축이 되어 편리합니다.

– 주택 및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9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속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경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 · 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신청은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평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사약서 뒷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할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부양전환 주택 포함)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구 및 단지역건	• 단지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불가하오니 학교개교시기 및 지구 인근 전기 공급을 위한 변전소와 케이블헤드 설치 등의 지구 내외부 여건에 대하여는 “고양원흥 A1블록 팜플렛” 13페이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은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하차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신청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등)

구 분	설치 내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균열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욕 실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고령자, 지체장애인
	좌식샤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수건걸이 높이조정	지체장애인
주 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장애인
거 실	비디오fon 높이조정, 아간센서등(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지체장애인
	시각경보기(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주동 · 통로 유도시설	음성유도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자가 거주하는주동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주택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구 분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1 2 3 4
	중량충격음		1 2 3 4
	화장실 소음		1 2 3 4
	경계소음		1 2 3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1 2 3 4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부분 공용부분	1 2 3 4 1 2 3 4
	내구성		1 2 3
환경관련 등급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자연도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1 2 3 4 1 2 3 4
	일조(빛환경)		1 2 3 4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1 2 3 1 2 3
	에너지성능(열환경)		1 2 3 4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1 2 3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공용부분	1 2 3 1 2 3
화재 · 소방 등급	화재 · 소방	화재감지및 경보설비	1 2 3
		배연 및 피난 설비	1 2 3
		내화 성능	1 2 3

LH 파주주택전시관 안내 (주소 : 파주시 와동동 145-3)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 · 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자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자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1952년9월 25일이전 출생자)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무원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체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무허가건물확인원이나 질의회신을 제출하여 주택소유자가 소명해야 함) ※ 무허가건물의 의미 : 종전 건축법(2006.5.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하거나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지자체로부터 무허가 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파주주택전시관안내 |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5-3 1층
- 운영기간 : 2012. 09. 24(월) ~ 09. 28(금) (10:00 ~ 16:00)
2012. 10. 02(화) (10: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오시는 길

지하철 : 전철 경의선 운정역 하차 – 도보(15분소요), 버스(3분 소요)
버 스 (가람마을 11단지에서 하차)

좌석버스	일반버스
2300번 (마포방면)	919번 (원당역-일산서구청방면)
2000번 (서울역, 연대, 수색방면)	706번 (구파발역-일산동구청방면)
1500번 (영등포시장, 일산방면)	567번 (구파발역-고양시청방면)
	66번 (운정-디지털미디어시티역)
	56번 (일산-대화역-가람마을11단지)
	8번 (일산방면)

팜플릿 배부처

문 의 처	LH 콜센터 ☎ 1600-1004
☎ LH 본사 고객센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인터넷청약 접수방법 ① LH 홈페이지 www.LH.or.kr →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②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청약
☎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 LH 파주주택전시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5-3번지)	당첨발표 확인방법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중앙 상단 “당첨자 조회” 또는 우측 즐겨찾기메뉴 중 “당첨자 조회” ③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아파트당첨자 조회”